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축산물 민간비축 지원 및 방출명령 근거 마련 등〉  
■ 조경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921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 목 차

|                                                                          |    |
|--------------------------------------------------------------------------|----|
| I. 제안경위 .....                                                            | 1  |
| II. 제안이유 .....                                                           | 1  |
| III. 주요내용 .....                                                          | 2  |
| IV. 개정안 발의 배경 .....                                                      | 3  |
| V. 검토의견 .....                                                            | 10 |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축산업 관련 책무 규정(안 제3조제1항·제3항,<br>안 제3조제2항·제4항·제5항 신설) ..... | 10 |
| 2. 축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근거 마련(안 제4조의2·안 제4<br>조의3 신설) .....              | 14 |
| 3. 축산업진흥 기본계획(안 제4조의2)의 효율적 수립 등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br>근거 마련(안 제4조의4 신설) .....  | 21 |
| 4.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안 제22조의2) .....                                | 24 |
| 5. 가축의 생산·출하조절 사업 근거 마련(안 제31조의2 신설) .....                               | 29 |
| 6.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자문 사항의 구체화(안 제32조의4) .....                                 | 33 |
| 7. 축종별 축산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안 제32조의5 신설) .....                            | 37 |

|                                                 |    |
|-------------------------------------------------|----|
| 8. 중소기업자 육성 및 지원 근거 마련(안 제33조의4 신설) .....       | 43 |
| 9. 축산기술 관련 조사·연구사업 수행 근거 마련(안 제33조의5 신설) ....   | 47 |
| 10. 수출 진흥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근거 마련(안 제33조의6 신설) ..   | 53 |
| 11. 도축·가공장의 현재화 지원 근거 마련(안 제33조의7 신설) .....     | 56 |
| 12. 축산물 민간비축 지원 및 방출명령 근거 마련(제33조의8 신설) .....   | 61 |
| 13. 권한 등의 위탁 근거 마련(안 제51조제5항제1호~제4호 신설 등) ..... | 65 |

##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조정태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7. 18.

다. 회 부 일 : 2024. 7. 19.

## II. 제안이유

1963년에 제정된 「축산법」은 한우를 비롯한 돼지, 닭, 오리 등 여러 축종산업을 육성·지원하는 제도적 근간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최근 한우, 돼지 등의 수급불안, 국제곡물가격 불안정에 따른 생산비 상승 등으로 축산농가들의 경영 부담이 우려되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한우·한돈 등 개별 축종별 산업지원법 제정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한우·한돈 등 개별 축종별 산업만을 지원하는 별도의 법안이 제정될 경우 타 축종 사육농가와의 형평성 저해 및 축종별 산업지원법 난립에 따른 행정·입법 비효율성 증대 우려가 커지고 있어, 모든 축산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고 효율적인 축산법 운영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한우·한돈법 등의 제정 취지를 반영하여 축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는 5년마다 한우, 돼지 등 주요 축종별로 축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실태조사, 조사·연구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가축의 생산·출하 안정 사업, 중소축산업자 육성·지원, 수출 진흥, 도축·가공시설의 현대화 지원 및 민간 비축사업 등의 근거를 「축산법」에 마련함으로써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Ⅲ. 주요내용

-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축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축산업 진흥 시책 마련 의무를 부여함(안 제3조).
-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주요 축종별 축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 다.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가축의 생산·출하 안정을 위한 사업, 중소축산업자 육성·지원, 축산기술 조사·연구사업, 수출 진흥, 도축·가공장 시설의 현대화 지원 및 민간 비축 사업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의2, 제33조의4, 제33조의5, 제33조의6, 제33조의7, 제33조의8).

#### IV. 개정안 발의 배경

□ FTA 등 시장개방 이후 한우농가는 자급률 저하와 농가호수 급감 등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음.

향후 한·미 FTA에 따른 소고기 관세율 인하 일정에 따라 2026년부터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가 폐지될 예정임.

##### 【 한.미 FTA에 따른 연도별 소고기 수입관세율 현황 】

(단위 : %)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40.0 | 37.3 | 34.6 | 32.0 | 29.3 | 26.6 | 24.0 | 21.3 |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 18.6 | 16.0 | 13.0 | 10.6 | 8.0  | 5.3  | 2.6  | 0    |

- 향후에도 CPTPP<sup>1)</sup> 등 지속적인 시장개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sup>2)</sup>,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022년 2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분야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30%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sup>3)</sup>

이를 위해서는 한우농가의 탄소 감축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해 보임.

1)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다양한 분야의 제품에 대한 관세를 전면 철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협력체제  
2) 전국한우협회는 CPTPP 가입 시 15년간 한육우 2조 880억원, 한우 1조 9,890억원의 생산감소를 추정하고 있음  
3) 2030년까지 축산분야 온실가스 30% 감축(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2.02.06.)

□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한우산업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한우수급조절, 도축·출하 장려금 지원,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한우농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한우농가의 탄소저감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의무화함으로써,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한우 지원 관련 제정안’이 현재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등 6건(이하 “「한우지원법안」이라 한다) 발의되었음.

### 【 한우 지원 관련 제정안 발의 현황 】

| 제정안명                                    | 발의의원   | 위원회<br>회부일자                      | 비 고             |
|-----------------------------------------|--------|----------------------------------|-----------------|
|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 문금주 의원 | '24. 6. 17.<br>(상정: '24. 6. 20.) | 법률안 소위원회<br>계류중 |
|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어기구 의원 | '24. 6. 24.                      | 미상정             |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br>관한 법률안」      | 이원택 의원 | '24. 7. 22.                      |                 |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br>관한 법률안        | 문금주 의원 | '24. 7. 24.                      |                 |
| 「한우산업지원법안」                              | 송옥주 의원 | '24. 7. 30.                      |                 |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br>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 윤준병 의원 | '24. 8. 6.                       |                 |

□ 이러한 「한우지원법안」과 관련하여 한우·한돈 등 개별 축종별 산업만을 지원하는 별도의 법안이 제정될 경우 타 축종 사육농가와의 형평성 저해 및 축종별 산업지원법 난립에 따른 행정·입법 비효율성의 증대 우려가 크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한우농가 뿐만이 아니라, 모든 축산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고 효율적인 축산법 운영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한우지원법」의 제정취지 등을 반영하여 「축산법」을 개정하려는 취지에서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보임.

## 【 축산법 개정안 「한우지원법안」 제정취지 반영 현황 】

| 한우지원법안<br>(문금주의원 대표발의안 기준) | 축산법 개정안(조경태의원안)                                                                                                                                                               |
|----------------------------|-------------------------------------------------------------------------------------------------------------------------------------------------------------------------------|
| 제1조(목적)                    |                                                                                                                                                                               |
| 제2조(정의)                    |                                                                                                                                                                               |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b>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신설 반영</b><br>→ (국가) 축산업 발전, 농가소득 증대, 축산물 안정적 공급, 교육·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종합시책 수립·시행, (지자체)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시행계획 수립·시행<br>→ (국가지자체) 중소 축산업자의 육성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 |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 제5조 (한우산업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b>제3조의2(축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신설 반영</b><br>→ (농식품부) 5년마다 주요 축종별 축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축산단체 참여)의 심의를 거쳐 수립<br>→ (지자체)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축산업진흥 시행계획 수립                 |
|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 <b>제3조의4(실태조사 등) 신설 반영</b><br>→ 기본계획 및 축산환경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                                                                                                             |
| 제7조(연구·개발)                 | <b>제31조의2(가축의 생산·출하조절 등 사업) 신설 반영</b><br>→ 가축의 안정적 생산에 필요한 자재 및 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근거 마련                                                                                            |
| 제8조(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 <b>제22조의2(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수정 반영</b><br>→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법률로 상향(현 대통령령)하고, 관리정보 범위 확대 및 축종별 축산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함께 마련                                                         |
| 제9조(한우산업발전협의회)             | <b>제32조의4(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수정 반영</b><br>→ 협의회 자문사항을 구체화, 한우·한돈법의 협의회 취지 반영                                                                                                         |
| 제10조(한우농가의 탄소 저감 촉진)       | <b>신설 제3조의2(축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등에 취지 반영</b><br>→ 5호 가축분뇨의 자원화처리, 약취저감 및 탄소저감 등 축산환경에 관한 사항                                                                                     |
| 제11조(한우의 수급조절)             | <b>신설 제3조의2(기본계획), 제32조의4(수급조절협의회)에 취지 반영 및</b><br><b>제31조의2(가축의 생산·출하조절 등 사업) 신설 반영</b>                                                                                      |
| 제12조(도축·출하장려금)             | → 4호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및 축종별 자급률 확보 등에 관한 사항                                                                                                                            |

| 한우지원법안<br>(문금주의원 대표발의안 기준) | 축산법 개정안(조경태의원안)                                                                                                                                                                     |
|----------------------------|-------------------------------------------------------------------------------------------------------------------------------------------------------------------------------------|
| 제13조(경영비용 부담 완화)           | → 수급조절협의회가 자문하는 수급대책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여 반영<br>→ 현행 도축·출하장려금, 축산경영안정자금, 사료구매자금 지원 사업 등을 포용할 수 있는 생산·출하조절사업*의 근거 마련                                                                         |
| 제14조(경영개선자금 지원)            | * ① 장관은 수급균형과 가격안정을 위한 생산·출하조절 등 사업 실시<br>② 축산물의 수급전망 사료 가격 등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 전망 등을 고려<br>③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함<br>→ 사료안정기금의 설치는 기본계획(제6호, 사료 안정적 수급 및 축산경영비 절감 등 축산농가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에 취지 반영 |
| 제15조(교육 지원)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3조의2(기본계획)에 신설 반영<br>→ 교육·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시책 수립·시행                                                                                                           |
| 제16조(소규모 한우농가 지원)          | → 연간 매출액, 사육시설 면적 등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중소 축산업자에 대해 육성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                                                                                                                  |
| 제17조(부산물의 활용)              | 신설 제3조의2(기본계획), 제32조의4(수급조절협의회)에 취지 반영<br>→ (기본계획) 4호 축산물의 유통구조개선 등에 관한 사항, 7호 축산물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 8호 축산물의 소비촉진·홍보 및 수출 진흥에 관한 사항                                                   |
| 제18조(소비 촉진)                | → (자문사항) 다. 축산물 소비촉진                                                                                                                                                                |
| 제19조(품질 및 유통구조 개선)         | 제32조의5(축산물의 유통구조개선 및 수출진흥 등) 제2항에 취지 반영                                                                                                                                             |
| 제20조(도축·가공시설 지원)           | → 도축·가공장 시설현대화 등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                                                                                                                                              |
| 제21조(민간 한우유통업체 육성)         | → (국가·지자체) 축산물 수출진흥, 우리 축산물 식문화 전파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
| 제22조(수출 기반조성)              |                                                                                                                                                                                     |
| 제23조(권한 위임·위탁)             |                                                                                                                                                                                     |
|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2024. 8. 14. 제출)

□ 반면, 현행 「축산법」 체계로는 제정안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각종 지원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FTA로 인한 시장개방 이후 한우산업의 피해가 비교적 높았으며<sup>4)</sup>, 주요 소고기 수입국가에 대한 관세 철폐가 예정<sup>5)</sup>되어 있어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한우지원법안」과 같이 관련 정책을 구체화·의무화 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한우협회 등의 의견도 존재함.

- 또한, 이와 관련하여 양봉·말·곤충·양잠 등에 관한 개별법<sup>6)</sup>도 존재하므로, 품목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개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sup>7)</sup>

#### 4) 【 주요 축산물 순수익 현황 】

(단위 : 천원)

| 구 분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
| 한우 번식우 마리당 순수익 | -365  | -1,071 | -1,424 | -1,465 | -585  | -192  | 266   | 234   | 214   | 303   | 518   | 563   | -409  | -1,276 |
| 한우 비육우 마리당 순수익 | 739   | -1,166 | -916   | -573   | -293  | 316   | 988   | 133   | -57   | -76   | 58    | 292   | -689  | -1,426 |
| 젖소 마리당 순수익     | 1,810 | 1,508  | 1,629  | 1,768  | 2,422 | 2,809 | 2,844 | 2,747 | 2,736 | 2,701 | 2,661 | 2,434 | 1,529 | 1,731  |
| 비육돈 마리당 순수익    | 40    | 143    | 9      | -28    | 84    | 97    | 82    | 86    | 48    | 6     | 47    | 68    | 57    | 23     |
| 산란계 마리당 순수익    | -4.0  | -1.1   | -5.9   | -0.3   | 4.1   | 2.3   | 1.8   | 11.8  | -2.2  | -1.8  | 2.5   | 19.6  | 7.3   | 4.8    |
| 육계 10마리당 순수익   | 3.2   | 1.4    | 0.9    | 0.6    | 1.1   | 0.6   | 0.2   | 1.4   | 1.2   | 1.8   | 0.3   | 0.6   | 2.6   | 1.6    |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2024. 8. 20. 제출)

- 5) 2026년부터 미국산 소고기, 2028년부터 호주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예정임.
- 6)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말산업 육성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7)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부 품목의 경우 산업육성 차원에서 별도 법령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주요 농축산물과 비교 시 생산방식과 산물의 유통 및 가격결정 체계가 특수(낙농·양봉 등)하고, 낮은 생산소비 저변으로 산업 활성화가 시급한 특이 품목(차·화훼·곤충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한우산업에 대한 별도의 정책지원  
필요성, 현행 제도 및 법률 체계와의 관계 여부, 다른 축종과의  
형평성,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V. 검토의견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축산업 관련 책무 규정(안 제3조제1항·제3항, 안 제3조제2항·제4항·제5항 신설)

#### 1)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 현행법 제3조에서 농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현행법 제3조의 축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이와 관련한 교육·홍보·전문인력 양성의 실시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u>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u>국가는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

| 현행                                                                                                                                                                                   | 개정안                                                                                                                                                                                                                                                             |
|--------------------------------------------------------------------------------------------------------------------------------------------------------------------------------------|-----------------------------------------------------------------------------------------------------------------------------------------------------------------------------------------------------------------------------------------------------------------|
| <p><u>행하여야 한다.</u></p> <p><u>&lt;신 설&gt;</u></p> <p>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 <p>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축산업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③ -----<br/>제1항 및 제2항-----<br/>-----<br/>-----.</p> <p>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축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홍보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축산분야 전문지식의 발전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

## 2) 관계기관 의견

### (농림축산식품부)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규정은 법률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책무를 법률로 명확히 정함으로써 적극적인 법률 집행을 유도하고, 장기적

인 관점에서 효율적인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국가가 수립·시행하게 하고, 지자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축산업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게 하는 책무 등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 3) 검토 의견

- 현행법 제3조에서는 축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주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농식품부 외의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개정안에 따라 축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이와 관련한 교육·홍보·전문인력 양성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안 제3조 제4항 및 제5항의 “교육·홍보·전문인력 양성”을 법 체계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항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유사 입법례 】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농산물의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종합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친환경농어업·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어업·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어업·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관한 육성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말산업육성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말산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2. 축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근거 마련(안 제4조의2·안 제4조의3 신설)

### 1)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축산업진흥 기본계획을 한우, 돼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축종별로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시·도지사로 하여금 지역의 축산환경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지역축산업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현 행                | 개정안                                                                                                                                |
|--------------------|------------------------------------------------------------------------------------------------------------------------------------|
| <u>&lt;신 설&gt;</u> | <u>제1장의2 축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u>                                                                                                      |
| <u>&lt;신 설&gt;</u> | <u>제4조의2(축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축산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한우, 돼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축종별로 수립하여야 한다.</u> |
|                    | <u>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
|                    | <u>1. 축산업의 발전 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u>                                                                                                    |
|                    | <u>2. 국내외 축산 여건과 축산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u>                                                                                             |

| 현행 | 개정안                                                                                                                                                                                                                                                                                                                                                                                                                                                                                                                                                                                                                                                                        |
|----|----------------------------------------------------------------------------------------------------------------------------------------------------------------------------------------------------------------------------------------------------------------------------------------------------------------------------------------------------------------------------------------------------------------------------------------------------------------------------------------------------------------------------------------------------------------------------------------------------------------------------------------------------------------------------|
|    | <p>3. <u>가축의 개량·증식 및 토종가축의 보존·육성에 관한 사항</u></p> <p>4. <u>축산환경 개선 및 축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u></p> <p>5. <u>가축의 수급조절, 가격안정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u></p> <p>6. <u>사료의 안정적 수급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u></p> <p>7. <u>가축 분뇨의 처리, 자원화 및 악취 저감에 관한 사항</u></p> <p>8. <u>가축 위생에 관한 사항</u></p> <p>9. <u>가축과 축산물의 수출 진흥에 관한 사항</u></p> <p>10. <u>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축산분야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사항</u></p> <p>11. <u>주요 축종의 자급률 확보에 관한 사항</u></p> <p>12. <u>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 관한 사항</u></p> <p>13. <u>축산물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u></p> <p>14. <u>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u></p> <p>15. <u>축산물의 소비촉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u></p> <p>16. <u>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업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u></p> <p>③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u></p> |

| 현행                 | 개정안                                                                                                                                                                                                                                                                                                                                                                                                                                               |
|--------------------|---------------------------------------------------------------------------------------------------------------------------------------------------------------------------------------------------------------------------------------------------------------------------------------------------------------------------------------------------------------------------------------------------------------------------------------------------|
| <p>&lt;신 설&gt;</p> | <p>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p> <p>제4조의3(지역축산업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지역의 축산환경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축산업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시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2) 관계기관 의견

### (농림축산식품부)

- ☐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한우, 돼지 등 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축종별로 축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관련 과제가 포함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구체화하고,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3) 검토 의견

□ 현행 「축산법」 제3조8)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계획 수립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재한 실정임.

동법 제42조의13<sup>9)</sup>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5년마다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등에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실정임.

○ 따라서, 개정안에서 축산업의 발전 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국

#### 8)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9) 「축산법」

**제42조의13(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5년마다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도 축산환경 개선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 및 시·도 축산환경 개선계획에 따라 1년마다 시·군·구 축산환경 개선 실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하며,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사의 설치·운영 현황과 개선에 관한 사항
2. 축산악취, 분뇨처리 등 축산환경에 관한 현황과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내외 축산 여건과 축산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축산업진흥 기본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세우도록 하는 한편,

시·도지사로 하여금 기본계획에 따른 지역축산업진흥 시행계획  
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  
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안 제4조의2제2항제7호에서 “가축 분뇨의 처리, 자원화 및  
악취 저감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 제47조  
제1항제6호에서 “축산 분뇨의 자원화·처리 및 이용”이라고 규  
정하고 있으므로, “가축 분뇨” 또는 “축산 분뇨” 중 하나로 통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추진실적)  
을 국회 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도 이를 참고하여 축산업진흥 기본계획 등에 대하여 국회  
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축산업 기본계획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국회 제출 및 보고 관련 유사 입법례 】

| 「교통안전법」                                                                                                                                        |
|------------------------------------------------------------------------------------------------------------------------------------------------|
| 제10조(국회에 대한 보고) 정부는 매년 국회에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교통사고 상황, 제15조에 따른 <u>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u> 및 제16조에 따른 <u>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 상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u> 하여야 한다.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 제27조(국회보고) 정부는 <u>기본계획·시행계획</u> 및 이에 대한 평가 등을 확정된 후 지체 없이 <u>국회에 보고</u> 하여야 한다.                                                                |
| 「농촌진흥법」                                                                                                                                        |
| 제5조(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등)⑤ 농촌진흥청장은 <u>기본계획 및 시행계획</u> 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u>추진 실적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u> 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u>보고하거나 제출</u> 하여야 한다. |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 제9조(추진실적보고서의 제출) 환경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u>시행계획의 추진실적</u> 을 종합한 <u>추진실적보고서</u> 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3. 축산업진흥 기본계획(안 제4조의2)의 효율적 수립 등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안 제4조의4 신설)

#### 1)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 개정안은 축산업진흥 기본계획(안 제4조의2) 및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현행법 제42조의13)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해 축산업의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u>&lt;신설&gt;</u> | <p>제4조의4(실태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제42조의13에 따른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축산업의 여건과 동향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축산 관련 기관·단체의 장 또는 축산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

## 2) 관계기관 의견

### (농림축산식품부)

- ☐ 개정안에 따른 기본계획이 축산업의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관련 규정이 필요함

## 3) 검토 의견

- ☐ 현행 「축산법」 제42조의13제1항<sup>10)</sup>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의2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축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음.

---

### 10)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2조의13(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5년마다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도 축산환경 개선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 및 시·도 축산환경 개선계획에 따라 1년마다 시·군·구 축산환경 개선 실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하며,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사의 설치·운영 현황과 개선에 관한 사항
2. 축산악취, 분뇨처리 등 축산환경에 관한 현황과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그런데, 현행 「축산법」에는 이러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상기 기본계획들을 보다 효율적·계획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 【 유사 입법례 】

| 「수산물의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b>제8조(실태조사)</b> ① <u>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u> |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b>제6조(실태조사)</b> ①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u>      |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b>제6조(실태조사 등)</b> ①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곤충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u>    |

#### 4.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안 제22조의2)

##### 1)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 개정안은 축산업의 허가 등에 관한 정보 등 축산업과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활용하기 위하여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려는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제22조의2(축산업의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 활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2조제1항·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 또는 등록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활용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2조의2(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br>-----축산업의 허가 등에 관한 정보 등 축산업과 관련된-----<br>-----<br>---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
|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이하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

| 현행                                                           | 개정안                                                                                                                   |
|--------------------------------------------------------------|-----------------------------------------------------------------------------------------------------------------------|
| ③ 제1항에 따른 대상 정보의 범위 등 그 밖에 정보의 통합·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p><u>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u></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2) 관계기관 의견

### (농림축산식품부)

- ☐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의 근거를 현행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대상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여 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 3) 검토 의견

□ 현행법 제22조의2<sup>11)</sup>는 동법 제22조제1항·제3항<sup>12)</sup>에 따른 축산업 허가·가축사육업 등록 정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5제2항<sup>13)</sup>에서는 상기 요청 대상 정보를 통합·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11) 「축산법」

**제22조의2(축산업의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 활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2조제1항·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 또는 등록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활용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상 정보의 범위 등 그 밖에 정보의 통합·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2)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종축업
2. 부화업
3. 정액등처리업
4.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

③ 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13)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5(통합 활용 대상 정보의 범위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공 요청 대상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에 관한 정보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변경허가·신고·변경신고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에 관한 정보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 정보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허가에 관한 정보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통합·활용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안은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통합·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대상을 ‘축산업과 관련된 정보’로 확대하여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임.

개정안에 따라 대상정보의 범위를 확대한 축산업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축산업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축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에 들어갈 정보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안 제22조의2제1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업의 허가 등에 관한 정보 등 축산업과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활용하기 위하여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축산업의 허가 등에 관한 정보 등 축산업과 관련된 정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안 제22조의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정보를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제1항의 정보와 동일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1항과 제2항의 정보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제2항에서는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제1항에서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어, 이 또한 통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5. 가축의 생산·출하조절 사업 근거 마련(안 제31조의2 신설)

### 1)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한우, 돼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에 대하여 수급균형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산·출하 안정 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신설> | <p>제31조의2(가축의 생산·출하 안정 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 돼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에 대하여 수급균형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산·출하 안정 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축의 생산·출하 안정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해당 가축의 수급관측, 주요 곡물의 국제곡물관측결과, 예상 생산비, 예상 생산량, 예상 수급상황 및 가격의 등락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축의 생산·출하 안정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가축의 생산·출하 안정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

## 2) 관계기관 의견

### (농림축산식품부)

- 「한우지원법」에서 다양한 사업 근거를 규정한 취지를 축산법에 반영하기 위하여, 농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가축의 생산·출하 안정 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포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 (전국한우협회)

- 「한우지원법안」에서 한우농가에 도축·출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과 같이 생산·출하조절과 관련된 재정적 지원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임.

## 3) 검토 의견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sup>14)</sup>에서는 채소류 등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생산·출하 안정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축산물은 상기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1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채소류 등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생산·출하 안정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현재 「축산법」 제3조<sup>15)</sup>에 따라 축산물 수급안정사업, 사료구매 자금지원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개정안은 한우, 돼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에 대하여 수급균형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생산·출하 안정 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른 생산·출하 안정 사업의 근거 마련으로 한우, 돼지 등 가축의 수급균형과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안정적인 축산물의 시장 공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31조의2 제목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가축의 생산·출하 안정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같은 조 제1항 본문에서는 “생산·출하 안정 등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법률의 정합성 측면에서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15)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한편, 「한우지원법」에서 한우농가에 도축·출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과 같이 출하 조절과 관련된 재정적 지원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6.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자문 사항의 구체화(안 제32조의4)

### 1)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 개정안은 현행법 제32조의4에 따른 축산물수급조절협회의의 자문 대상을 보다 구체화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제32조의4(축산물수급조절협회의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가축 및 축산물(「낙농진흥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원유 및 유제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한 자문(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축산물수급조절협회의(이하 "수급조절협회의"라 한다)를 둔다. | 제32조의4(축산물수급조절협회의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현행과 같음)                                            |
| ② 수급조절협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 ② -----<br>-----.                                                                   |
| 1. 축산물의 품목별 수급상황 조사·분석 및 판단에 관한 사항                                                                                                                                                          | 1. (현행과 같음)                                                                         |
| 2. <u>축산물</u>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제도 및 사업의 운영·개선 등에 관한 사항                                                                                                                                       | 2. <u>축산물의 품목별</u> -----<br>-----                                                   |
| 3. <u>축종별</u> 수급안정을 위한 <u>대책</u> 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3. <u>소고기, 돼지고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축산물의</u> ----- <u>다음 각 목의 대책</u> -----<br>----- |
| <신 설>                                                                                                                                                                                       | 가. 품목별 적정 사육규모                                                                      |
| <신 설>                                                                                                                                                                                       | 나. <u>축산 자재 및 기술</u> [가축개량·사양관리(알맞은 영양소                                             |

| 현행                                                                                                                                                                                                                                                                                                                                                                  | 개정안                                                                                                                                                                                                                                             |
|---------------------------------------------------------------------------------------------------------------------------------------------------------------------------------------------------------------------------------------------------------------------------------------------------------------------------------------------------------------------|-------------------------------------------------------------------------------------------------------------------------------------------------------------------------------------------------------------------------------------------------|
|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4. 그 밖에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p> <p>③ 수급조절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가축 및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④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조절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축종별 소위원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p>를 공급하여 잘 자라고 생산을 잘하도록 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료의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다]의 개발·보급</p> <p>다. 축산분야 전문인력 육성·지원</p> <p>라. 축산물 품질관리</p> <p>마.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지원</p> <p>바. 축산물의 안정적인 소비 및 소비자 보호</p> <p>4.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

## 2) 관계기관 의견

### (농림축산식품부)

- ☐ 현행 「축산법」은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자문 대상을 축산물의 수급상황 조사분석, 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축종별

수급안정 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포괄적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을 축산농가 및 관련 생산자단체 등이 알기 쉽게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 (전국한우협회)

□ 농식품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축산수급조절협의회의 경우 위원회로서의 성격·기능이 자문의 기능만 있어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역할이 부족함. 이에, 한우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하므로,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임.

### 3) 검토 의견

□ 현행법 제32조의4<sup>16)</sup>는 가축 및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

#### 16) 「축산법」

제32조의4(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가축 및 축산물(「낙농진흥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원유 및 유제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한 자문(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이하 "수급조절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수급조절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축산물의 품목별 수급상황 조사·분석 및 판단에 관한 사항
2. 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제도 및 사업의 운영·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축종별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③ 수급조절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가축 및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조절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축종별 소위원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한 자문(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축산물수급조절협회의 자문 대상을 축종별 적정 사육규모, 축산자재 및 기술개발, 전문인력 육성, 품질관리, 유통구조개선 및 수출지원 등으로 보다 구체화하여 규정하려는 취지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축산물수급조절협회는 위원회로서의 성격·기능이 자문으로만 국한되어 있어 실제 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있어 그 역할이 한정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한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수급조절 관련 정책 등 주요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별도 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7. 축종별 축산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안 제32조의5 신설)

### 1)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한우·돼지 등 가축의 사육과 축산물의 유통·소비 등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축종별 축산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신설> | <p>제32조의5(축종별 축산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한우·돼지 등 가축의 사육과 축산물의 유통·소비 등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축종별 축산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축종별 축산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축종별 축산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종별</p> |

| 현행 | 개정안                                                                                                                                      |
|----|------------------------------------------------------------------------------------------------------------------------------------------|
|    | <p><u>축산정보시스템을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과 통합 또는 연계하여 구축·운영할 수 있다.</u></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u>축종별 축산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

## 2) 관계기관 의견

### (농림축산식품부)

- ☐ 한우, 돼지 등 가축의 사육과 축산물의 유통·소비 등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축종별 정보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 3) 검토 의견

□ 현행법 제22조의2<sup>17)</sup>는 동법 제22조제1항·제3항<sup>18)</sup>에 따른 축산업 허가·가축사육업 등록 정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5제2항<sup>19)</sup>에서는 상기 요청 대상 정보를 통합·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 17) 「축산법」

**제22조의2(축산업의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 활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2조제1항·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 또는 등록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활용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상 정보의 범위 등 그 밖에 정보의 통합·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8)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종축업
2. 부화업
3. 정액등처리업
4.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

③ 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19)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5(통합 활용 대상 정보의 범위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공 요청 대상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에 관한 정보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변경허가·신고·변경신고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에 관한 정보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 정보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허가에 관한 정보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통합·활용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안 제22조의2는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5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 통합·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대상을 ‘축산업과 관련된 정보’로 확대하여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안 제32조의5는 상기 안 제2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과는 별개로 한우, 돼지 등 가축의 사육 및 축산물 유통·소비 등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축종별 축산업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려는 취지로 보임.

안 제22조의2 및 안 제32조의5에 따른 각각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비교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향후 계획은 다음 표와 같음.

【 개정안 제22조의2 및 제32조의5 정보시스템 간 비교 및 향후계획 】

| 구분        | 개정안 제22조의2(상향입법)                                                                                                                                                  | 개정안 제32조의5(신설)                                                                                                                                                                                              |
|-----------|-------------------------------------------------------------------------------------------------------------------------------------------------------------------|-------------------------------------------------------------------------------------------------------------------------------------------------------------------------------------------------------------|
|           |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기존)                                                                                                                                                    | 축종별 축산정보시스템(신규)                                                                                                                                                                                             |
| 구축·운영 근거  | <p>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p> <p>* 시스템 구축 근거를 강화(통합 정보 운영→시스템 구축)하고 내용을 구체화(관리할 수 있는 정보범위 포함)</p>                                                                     | <p>축산법 안 제32조의5(신설, 조경태의원)</p> <p>* (검토의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스템 인프라(서버 등)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미 구축되어 있는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 활용할 필요, 다만, 생산자단체 자체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p>                                                                |
| 구축 배경     | <p>농가별 가축 사육밀도, 방역관리 등을 위해 허가등록, 이력관리, 방역정보, 경영체등록 정보 등을 농가 중심으로 통합</p> <p>* '20년 구축 후 축산 방역 정책에 활용 중</p>                                                         | <p>생산자단체에서 한우법(안), 양돈법(안)에 대책 수립을 위한 기반정보 확보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조항을 포함</p> <p>* 구축정보 내용 시기 등 구체적 구축안은 없음</p>                                                                                                      |
| 관리정보      | <p>(현행) 생산자 기반정보</p> <p>- 축산업허가등록(지자체), 가축분뇨 배출 시설정보(환경부), 축산물이력, 가축방역, 농업경영체등록 정보</p> <p>(향후) 생산정보+ 유통정보, 소비정보 추가</p> <p>* 축평원 기운영 중 유통, 소비정보 + 소비자 정보 추가 확대</p> | <p>(향후) 생산자정보 + 유통정보 + 소비정보</p> <p>* 축종별 중합대책(안) 등 고려 구축정보 구체화</p> <p>* 생산정보는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중 일부 제공 검토(양돈은 한돈협회에서 일부 보유 중)</p> <p>* 유통, 소비정보는 추가 확보 필요, 필요시 축평원 정보 일부 제공</p>                                |
| 사용자       | <p>(현행) 농식품부, 지자체 공무원(축산 방역),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업통합점검반 등</p> <p>(향후) 필요시 생산자단체 추가</p> <p>* 권한에 따라 정보접근 범위 제한</p>                                                        | <p>(향후) 생산자단체, 필요시 농식품부 포함</p>                                                                                                                                                                              |
| 운영기관 및 예산 | <p>축산물품질평가원('20~)</p> <p>* 축산법 개정 시, 시행령에서 위탁근거 마련</p> <p>* 구축비용('20년) : 26억(인프라 구축 8억 + 프로그램 개발비용 18억)</p> <p>* 운영비용('23년) : 11억</p>                             | <p>미정</p> <p>* 축산법 개정안에 축산단체에 위탁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포함</p> <p>* 내용, 시기 등이 구체화되지 않았으므로 시행령 개정안에 구체적 위탁기관은 미지정</p> <p>* 시스템 구축 수준에 따라 비용은 상이</p> <p>-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비용 고려 시, 유통소비 정보를 추가하면 축종별로 20~30억원 정도 소요 예상됨</p> |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2024. 8. 14. 제출)

□ 두 개의 정보시스템과 관련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에 따르면, 모두 향후 생산자정보, 유통정보 및 소비정보를 관리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기능이 유사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유사한 기능의 정보시스템을 중복으로 규정하는 것이 재정 건전성 및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8. 중소축산업자 육성 및 지원 근거 마련(안 제33조의4 신설)

### 1)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 ☐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연간 매출액 또는 사육시설 면적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축산업자에게 자금 및 기술교육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신설> | 제33조의4(중소축산업자 육성 및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연간 매출액 또는 사육시설 면적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축산업자에게 자금 및 기술교육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u> |

### 2) 관계기관 의견

#### (농림축산식품부)

- ☐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중소축산업자에게 자금 및 기술교육 등을 우선 지원하여 축산업 발전을 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 3) 검토 의견

□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에 따르면, 현행 「축산법」 제3조<sup>20)</sup>에 따라 축산업자 등을 대상으로 축사시설현대화, 사료구매자금 및 수급안정 사업비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축산업자에 대한 우대 지원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연간 매출액 또는 사육시설 면적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축산업자에게 자금 및 기술교육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중소축산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금 지원과 기술교육 등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 우선 지원 관련 유사 입법례 】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b>제37조(농촌 여성·청년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b>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여성·청년의 농촌융복합산업 참여를 촉진하고 농촌 여성·청년의 경제적 권익 신장을 위하여 농촌 여성·청년에게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자금·인력·기술·교육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 「유통산업발전법」                         |                                                                                                                      |
| <b>제24조(유통관리사) ④</b>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통관리사를 고용한 유통사업자 및 유통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다른 유통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우선하여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20)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다만, 안 제33조의4의 제목은 “중소축산업자”인 반면, 본문은 “축산업자”이므로,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중소축산업자”로 통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안 제33조의4는 자금 및 기술교육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는 “중소축산업자”의 범위를 ‘연간 매출액’ 또는 ‘사육시설 면적’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안 제33조의4 본문은 ‘연간 매출액’ 및 ‘사육시설 면적’이 어떤 기준에 의한 개념인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연간 매출액’ 또는 ‘사육시설 면적’의 범위를 설정하거나, 개념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 매출액 및 면적 관련 유사 입법례 】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규모유통업자"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맹본부"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기업회계기준상 순액법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총매출액을 말하며, 가맹본부의 경우 소매업종 매출액과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한 상품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1천억원 이상인 자

나. 매장면적(매장의 바닥면적에 100분의 95를 곱하여 산출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는 자

## 9. 축산기술 관련 조사·연구사업 수행 근거 마련(안 제33조의5 신설)

### 1)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의 사양관리 지침 개발 등 축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신설> | <p>제33조의5(조사·연구사업 등) ①</p> <p>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축산기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축의 사양관리 지침 개발</li> <li>2. 축산기술의 품질관리 및 평가</li> <li>3. 축산기술의 보급 및 사후관리</li> <li>4. 축산기술의 실용화</li> <li>5. 축산기술의 경제성 및 장기효과 평가</li> <li>6. 축산물의 가공·유통 기술 및 식육부산물(내장, 머리, 다리, 꼬리, 뼈, 혈액 등 식용이 가능한 부분을 말한다)의 식용 또는 사료화 이용 기술</li> <li>7. 도축·가공 기술</li> <li>8. 그 밖에 축산기술 조사·연구에 필요한 사항</li> </ol> |

| 현행 | 개정안                                                                                                 |
|----|-----------------------------------------------------------------------------------------------------|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축산 기술을 연구 및 개발하는 기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계·연구기관 등의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 2) 관계기관 의견

### (농림축산식품부)

- ☐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미래변화 대응 기반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기술 연구·개발사업이 필요하므로 그 법적 근거를 「축산법」에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 3) 검토 의견

□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5조<sup>21)</sup> 등을 근거로 하여 ‘2025 축산현안대응산업화기술개발(R&D) 사업<sup>22)</sup>’을 추진 중에 있으나, 「축산법」 상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미래변화 대응 기반 구축을 위해 축산업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기술 연구·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축산기술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제33조의5제1항제6호에서 “식육부산물”을 “내장, 머리, 다리, 꼬리, 뼈, 혈액 등”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식육부산물의 범위는 다양하고, 기술발전으로 식용 가능한 부위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2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5조(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연구 등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 생산기술, 농업 생산기반 정비기술, 농산물 생산 이후의 관리기술, 농업 경영기법, 농업인 안전작업기술, 농산물 유통기술, 농산물 가공·식품 제조기술 및 음식물 조리법 등에 관한 연구·개발·보급과 농업 및 식품산업 현장연구, 산학연 공동연구 및 연구평가 관리체제의 확립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축종별 생산성 향상 사료 개발, 한국형 축산에너지 절감모델 및 맞춤형 자재 개발 등

따라서, 제33조의5제1항제6호의 “식육부산물(내장, 머리, 다리, 꼬리, 뼈, 혈액 등 식용이 가능한 부분을 말한다)”을 “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육부산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농림축산식품부 '25년도 R&D 투자계획 】

### ① ICT 융복합 스마트농업

- 스마트농업을 노지농업까지 확대하여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기후위기·식량안보 대응 기술기반 확립을 위해 투자 확대

▶'25년 신규: 노지스마트농업활용모델, K-수직농장세계화프로젝트, 지능형농작업기계개발, 사물인터넷 활용 미래형 농기계 디지털시스템 개발

▶계속사업: 스마트팜, 친환경동력원적용농기계

### ② 농생명 바이오산업 육성

- **그린바이오 산업**의 기반기술 확보 및 관련산업(화학제품 등을 바이오기반으로 전환, 농산물 기반 에너지 등) 조성을 위해 신규사업 기획

▶'25년 신규: 그린바이오산업활성화혁신기술개발, 첨단정밀육종활용고부가산업화기술개발, 눈으로보는 가축전염병 바이러스 신속 검출 기술개발

▶계속사업: 고위험동물감염병대응, 농생명마이크로바이옴

### ③ 고품질 농식품·수출 촉진

- 배양육용 세포주 대량 배양·배지원료 공급 기술 등 **新식품**, 스마트 제조 등 **푸드테크 핵심**

▶계속사업: 고부가가치 식품기술, 국제협력기반 수출농업 기술

기술 확보를 위한 계속사업 투자 확대

### ④ 기후변화·재난 대응

- **농업용수 공급 및 안전관리** 지능화·고도화를 통한 안전한 농업환경 조성, **축산 온실가스 저감**, 농림위성 활용을 위한 신규사업 기획

▶'25년 신규: 기후변화대응지능형농업기반관리기술, 농림위성활용기술, 축산배출가스 연료 전환기술

▶계속사업: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

### ⑤ 국민 삶의 질·글로벌 협력

- 노동력 절감, 반려산업 확대 등 현장 문제해결형 기술개발 및 농식품분야 국제 공동 이슈 대응을 위한 투자 확대

▶'25년 신규: 농산업기술국제협력

▶계속사업: 기술사업화지원, 농식품과학기술융합형인력양성 등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2024. 8. 14. 제출)

## 【 축산분야 R&D 공동연구 현황 】

- '24년 신규 연구과제 : -
- '23년 신규 연구과제 : 1건 중 1건 공동 연구
  - 복합기술 투입 저탄소 악취저감 모델 개발 실증연구 : 순천대학교, 전남 환경산업진흥원, (주)엘제이바이오, (주)지에스엘바이오, (주)웰케어스, (주)하나시스템
- '22년 신규 연구과제 : 4건 중 4건 공동 연구
  - 반추동물 장내발효 메탄발생 저감을 위한 저분자 합성사료첨가제 국산화 기술 개발 : 서울대학교, 경북대학교, CTC바이오
  - 한우에서 장내발효 메탄저감 효과가 있는 제품의 국내 효과 실증 : 서울대학교, 카길애그리퓨리나
  - 가축시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스마트 소 이송 시스템 개발 : (주)지금강, 전북대학교, (주)정피앤씨연구소
  - 농업용 RE-100달성을 위한 양돈시설 적용 소형화 가축분뇨 에너지자원화시스템 개발 및 실증 : 호서대학교, (주)젯트, 제주대학교, (주)농업회사법인 대건환경,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2024. 8. 14. 제출)

## 10. 수출 진흥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근거 마련(안 제33조의6 신설)

### 1)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축산물의 수출을 진흥하고 우리의 축산물 식문화를 전파하기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및 홍보 등 수출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신설> | <p>제33조의6(수출 진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축산물의 수출을 진흥하고 우리의 축산물 식문화를 전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외시장 개척 및 홍보</li> <li>2. 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li> <li>3. 무역정보의 수집·제공</li> <li>4. 그 밖에 수출 진흥에 필요한 사항</li> </ol>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

## 2) 관계기관 의견

### (농림축산식품부)

- 유사한 규정이 농식품분야 관련법에 있으나, 축산물의 수출진흥에 관한 규정을 「축산법」에 두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등의 의견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동의함.

## 3) 검토 의견

-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축산물과 관련하여 해외시장의 개척 및 홍보, 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축산물의 수출을 진흥하려는 취지로 보임.

현재 「식품산업진흥법」 제10조<sup>23)</sup>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sup>24)</sup>에서 우리나라 식품과 농산물의 해외시장

### 23)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을 말한다.
2. “식품산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식품산업을 말한다.
- 2의2.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 2의3.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제10조(국제교류 및 무역진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진출과 전통 식문화의 전파를 위하여 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시장개척·홍보, 외국인의 투자유치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2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진출 및 수출 진흥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축산업도 이에 포함됨.

따라서, 안 제33조의6는 「식품산업진흥법」 제10조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와 중복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나. 수산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제59조(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과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의 전파 등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식품산업을 업으로 하는 자와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11. 도축·가공장의 현재화 지원 근거 마련(안 제33조의7 신설)

### 1)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 개정안은 도축·가공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축산물전자거래 등 관련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신설> | <p>제33조의7(도축·가공장의 현대화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축·가공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축·가공장의 축산물전자거래(전자경매를 포함한다) 확대</li> <li>2. 도축·가공장의 저온유통체계 확립</li> <li>3. 도축·가공장의 위생 여건 개선</li> <li>4. 그 밖에 도축·가공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도축·가공장 영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

## 2) 관계기관 의견

### (농림축산식품부)

- ☐ 가축질병 예방 및 위생·안전한 축산물의 국민 공급을 위한 도축장과 가공장의 시설현대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 등 지원 근거 마련 필요성에 공감함.

## 3) 검토 의견

- ☐ 현행 「축산법」 제3조<sup>25)</sup>에 따라 축산물도축 가공업체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도축·가공장의 축산물전자거래 확대 및 도축·가공장의 저온유통체계 확립 등 도축·가공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축질병 예방과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이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의 조문 체계의 통일성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

### 25)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임.

- 또한, 안 제33조의7제1항제2호의 “저온유통”은 ‘축산물의 생산단계(도축 등)부터 가공·유통·소비단계까지 저온으로 관리하여 신선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유통방법’을 의미함.<sup>26)</sup>

그런데, “저온유통”이라는 용어가 현행법상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sup>27)</sup>에서 쓰이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제33조의7제1항은 각 호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지원계획’을 ‘지원시책’ 또는 ‘지원대책’ 등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물류정책기본법」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정온(定溫)물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 심사 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26)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제시

27)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모든 유통과정에서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활어·선어·냉동수산물 등의 보존방식에 따른 유통 위생관리기준의 확립
2. 저온유통 등을 위한 유통시설의 시설기준 마련 및 모니터링
3. 저온유통 등을 위한 운송 기준
4. 그 밖에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유사 입법례】

### 물류정책기본법

제23조(물류 공동화·자동화 촉진) ③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제1항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이하 “클라우드컴퓨팅”이라 한다)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그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여 운송[이하 “정온(定溫)물류”라 한다]하기 위하여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
  -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제7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식품
  - 나.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 다. 그 밖에 첨단전자 부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

## 【 도축·가공업체 지원 사업 개요 】

|       |                                                                                                                                                                                                                                                                                                                                                                     |                   |                  |                  |                  |
|-------|---------------------------------------------------------------------------------------------------------------------------------------------------------------------------------------------------------------------------------------------------------------------------------------------------------------------------------------------------------------------|-------------------|------------------|------------------|------------------|
| 세부사업명 | 농업자금이차보전                                                                                                                                                                                                                                                                                                                                                            |                   | 회계               | 농특회계             |                  |
| 내역사업명 | 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사업                                                                                                                                                                                                                                                                                                                                                       |                   | 예산(백만원)          | 119,000          |                  |
| 근거법령  |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                  |                  |                  |
| 사업내용  | ◦ (도축·가공업체) 가축질병 예방과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도축 환경 조성을 위해 도축장 및 가공장에 시설·운영자금 지원(시설자금: 352억원, 운영자금: 600억원)<br>◦ (계란 가공장 등) 국내산 계란의 위생·안전 및 소비자 신뢰를 위해 산란계 농장, 계란 유통업체의 시설 확충 및 HACCP 운영 등을 위한 시설·운영자금 지원(시설자금: 42억원, 운영자금: 28억원, 다만 '24년도는 일부 긴급경영안전자금으로 편성)<br>◦ (유제품 시설) 국내산 유제품의 위생·안전 및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유제품 생산·유통업체의 시설 개선 및 HACCP 운영 등을 위한 시설·운영자금 지원(시설자금: 98억원, 운영자금: 70억원) |                   |                  |                  |                  |
| 지원대상  | ◦ (도축·가공업체) 소·돼지 도축장 통폐합, 동물복지 도축장 신설, 기타 가축 도축장 신설, 도축장 내 식육포장처리·식육가공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br>◦ (계란 가공장 등) 산란계 농가, 식용란수집판매업자, 계란유통센터<br>◦ (유제품 시설) 유가공업자, 집유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                   |                  |                  |                  |
| 금리조건  | ◦ (시설자금) 연 2.0~3.0%, 변동금리<br>◦ (운영자금) 도축·가공업체 – 연 0~3.0% 또는 변동금리<br>계란 가공장 및 유제품 시설 연 2.0~3.0% 또는 변동금리                                                                                                                                                                                                                                                              |                   |                  |                  |                  |
| 상환기간  | 구분                                                                                                                                                                                                                                                                                                                                                                  | 도축가공업체            |                  | 유제품              | 계란               |
|       |                                                                                                                                                                                                                                                                                                                                                                     | 신설                | 개보수              |                  |                  |
|       | 시설자금                                                                                                                                                                                                                                                                                                                                                                | 5년 거치<br>10년 균분상환 | 3년 거치 7년<br>균분상환 | 3년 거치 7년<br>균분상환 | 3년 거치 7년<br>균분상환 |
|       | 운영자금                                                                                                                                                                                                                                                                                                                                                                | 1년 거치 일시상환        |                  | 1년 거치 일시상환       | 2년 거치 3년<br>균분상환 |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2024. 8. 14. 제출)

## 12. 축산물 민간비축 지원 및 방출명령 근거 마련(제33조의8 신설)

### 1)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축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축산발전기금으로 축산물유통업자의 축산물 비축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미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등의 내용임.

| 현행   | 개정안                                                                                                                                                                                                                                                                                                                                                                       |
|------|---------------------------------------------------------------------------------------------------------------------------------------------------------------------------------------------------------------------------------------------------------------------------------------------------------------------------------------------------------------------------|
| <신설> | <p>제33조의8(축산물 민간비축 지원 및 방출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으로 축산물유통업자의 축산물 비축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미리 지원할 수 있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축산물유통업자에게 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축산물유통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축산물의 방출을 명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축산물유통업자는 그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방출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축산물유통업자에게 지원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p> |

## 2) 관계기관 의견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은 시장의 자율기능에 따라 결정되고 있으나, 정부가 직접 수급안정 정책을 통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장개입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그 수급안정 정책 수단의 하나로써 민간 유통업체의 자율 비축기능의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 다만, 민간비축에 따른 재정소요에 비해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고, 비축물량이 다시 시장에 방출되어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며, 과거 축산법상 축산물(소고기, 돼지고기) 구매·비축사업의 근거가 있었으나 과도한 재정소요 및 축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폐지된 사례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 시 민간비축지원은 신중한 검토 필요

## 3) 검토 의견

-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은 시장 논리에 의거 결정되나, 생산자 또는 소비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경우 정부가 수급안정 정책을 통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장개입을 하고 있음.
- 개정안은 축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행법 제43조<sup>28)</sup>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으로 축산물유통업자의

축산물 비축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미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상기 지원을 받은 축산물유통업자에게 필요한 경우 축산물유통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축산물의 방출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통하여 축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안 제33조의8과 유사한 입법례로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sup>29)</sup>가 있음.

다만, 과거 「축산법」 상 축산물(소고기, 돼지고기) 수매·비축사업의 근거가 있었으나 과도한 재정소요 및 축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폐지된 사례<sup>30)</sup>가 있었으므로, 개정안 심사 시 이

---

28) 「축산법」

**제43조(축산발전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물 수급을 원활하게 하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29)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수산물 민간수매사업 지원 및 방출명령)**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단기적인 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발전기금으로 수산물유통사업자에게 그 대금의 일부를 미리 융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대금을 융자 지원받은 수산물유통사업자에게 수산물 수급조정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산물유통사업자가 수매·보관하고 있는 수산물의 방출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수산물유통사업자는 그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수산물유통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원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30) 「축산법」 [법률 제4557호, 1993. 6. 11., 전부개정]

**제35조 (가격안정조치)** ① 농림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예관한법률 제12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부류도매시장 및 축산부류공판장(이하 각각 “都賣市場” 및 “共販場”이라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안 제33조의8제1항과 같이 축산물유통업자에게 축산물 비축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미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면, 축산발전기금의 용도를 규정하는 현행법 제57조<sup>31)</sup>에 그 근거를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다)에서 지정축산물의 가격이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정상한가격과 안정하한가격의 범위안에  
서 유지될 수 있도록 수매·비축·방출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축산법 개정('93.6.11.)  
에 따라 사업근거가 신설된 후, '99.1.29. 개정 시 폐지).

31) 「축산법」

제57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2.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
  3. 가축과 축산물의 유통개선
  4. 사료의 수급 및 사료자원의 개발
  5. 재해 및 외국으로부터의 악성가축질병 유입등으로 인한 긴급가축방역
  6. 기금사업에 대한 사업비 및 경비의 지원
  7. 기타 축산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사업
- ②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기금에서 지급할 보조금은 제54조제5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납입금과 수익금의 합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보조금의 지급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3. 권한 등의 위탁 근거 마련(안 제51조제5항제1호~제4호 신설 등)

#### 1)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 개정안은 안 제22조의2제1항 및 제32조의5제1항 신설에 따른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p>제5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③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정사에 대한 교육을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정기점검 등의 업무 중 일부를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 따른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 업무를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lt;신설&gt;</p> | <p>제51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br/>-----다음<br/>각 호의 업무를 축산-----<br/>-----.</p> <p>1.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업<br/>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p> |

| 현행                                                                                                                                                                                                | 개정안                                                                                                                                                                                                                                                                                                    |
|---------------------------------------------------------------------------------------------------------------------------------------------------------------------------------------------------|--------------------------------------------------------------------------------------------------------------------------------------------------------------------------------------------------------------------------------------------------------------------------------------------------------|
|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⑥ (생략)</p> <p>⑦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0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u></p> | <p><u>관한 업무</u></p> <p><u>2. 제29조제1항에 따른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 업무</u></p> <p><u>3.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축종별 축산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u></p> <p><u>4. 제40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u></p> <p>⑥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

## 2) 관계기관 의견

### (농림축산식품부)

□ 개정안에 따라 축종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가 법률로 상향되고, 축종별 축산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업무의 위임·위탁 규정의 보완이 필요함.

한편, 개정안을 전체적으로 볼 때, 「한우지원법」 제정안의 주

요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나, 그로 인해 세부적인 내용과 법체계상 가지조문이 많아 그 취지를 살리면서 보다 간소하게 법체계 및 자구를 수정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3) 검토 의견

- ☐ 개정안은 안 제22조의2제1항 및 제32조의5제1항 신설에 따른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법 상 위탁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
|-------|
| 문 의 처 |
|-------|

|              |
|--------------|
| 02)6788-5426 |
|--------------|